

# 위원회설치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2006. 3. 1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정관,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.

**제3조(설치)** ①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장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.

③ 위원회 설치를 위해 총장의 재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유, 목적, 기능, 구성, 운영사항 등을 기재한 규정(안)을 작성하여 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
**제5조(소집과 의결)** ① 각 위원회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그리고 각 규정에 의한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필요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교원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(위촉)한다.

**제9조(해산)**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3-0-1 위원회설치 규정

② 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가 그 활동연장에 관한 사전 승인없이 기한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수원과학대학교에 귀속된다.

**제10조(규정의 개·폐)** 각 위원회의 규정을 개·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발의와 규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